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본청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평가기구 신설 (+1과(소방분석제도과)) 및 필요인력 3명(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 소방령 1, 소방위 1)을 증원하고, 신설 과(소방분석제도과)의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빅데이터 운영 인력 1명(소방위 1)을 본청으로 재배치 하는 한편,

화재예방과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로 이관하고 행정환경에 효율적 대응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강화를 위해 일반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정책과·화재예방과·화재대응조사”를 “소방정책과·소방분석제도과·화재예방과·화재대응조사”로, “소방정으로”를 “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5호, 제20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2.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관리
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관리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9.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제도의 운영

11.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4. 소방관련 빅데이터 정보개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승진 시험·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평가

별표 3 총계 “215”를 “219”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183”을 “186”으로 하며, 소방령 “49”를 “50”으로 하고, 소방위 “50”을 “52”로 하며, 일반직 계 “32”를 “3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소방경 “행정주사”를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소방경 “1”을 “3”으로 한다.

별표 3 “삭제”를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소방위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소방위 “1”을 “2”로 하고, “삭제”를 삭제하며, 행정서기 또는 소방

교 “행정서기”를 “행정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소방사 “행정서기보”를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방재안전주사”를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로 한다.

별표 5의2 총계 “43”을 “42”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및 소방정 이하 “19”를 각각 “18”로 한다.

별표 6에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3명 (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1명, 소방령 1명, 소방위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관련)

총계	70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9
소방공무원 계	64
소방감	1
소방정	3
소방령	5
소방경	10
소방위	17
소방장	18
소방교	7
소방사	3
일반직 계	5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2
간호주사	1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시설연구사	삭제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일반직 계	1.0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방정책국) ① 소방정책국 에 <u>소방정책과 · 화재예방과 · 화재대응조사과</u> 및 소방산업과 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 는 <u>소방정으로</u> 보한다.	제3조(소방정책국) ① ----- -- <u>소방정책과 · 소방분석제도 과 · 화재예방과 · 화재대응조사 -----</u>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소방 정으로</u>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1.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의 제 · 개정</u> 에 관한 사항 2. <u>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 관리에</u> 관한 사항 3. <u>국가화재안전기준 제 · 개정 및 운영</u> 에 관한 사항 4. <u>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u> 에 관 한 사항 5. <u>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 위주설계에</u> 관한 사항 6. <u>화재안전 국민제안 등 민원 처리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 · 관리</u> 에 관한 사항

③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3. (생략)
4.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의 설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제도의 운영·관리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9.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제도의 운영

11.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14. 소방관련 빅데이터 정보개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④ -----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u>정 · 운영</u>	
6. 특수건축물 등의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7.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 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삭 제>
8. 소방제도 관련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9.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 관리업 제도의 운영 · 관리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삭 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15.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삭 제>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2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의 운영	<삭 제>
21. · 22. (생 략)	21. · 22. (현행과 같음)
23.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④ · ⑤ (생 략)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 ④ (생	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 ④ (현

략) ⑤ 인재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평가 2.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행·평가 3.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4.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5.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시행·평가 <신 설> 6. ~ 12. (생략)	행과 같음) ⑤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승진시험·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평가 7. ~ 13. (현행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15</u>	<u>219</u>	+4
소방공무원 계			<u>183</u>	<u>186</u>	+3
	.		.	.	
	.		.	.	
소방령			<u>49</u>	<u>50</u>	+1
	.		.	.	
소방위			<u>50</u>	<u>52</u>	+2
	.		.	.	
일반직 계			<u>32</u>	<u>33</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u>1</u>	<u>2</u>	+1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또는 소방경			<u>1</u>	<u>3</u>	+2
	.		.	.	

<u>공업주사 또는 소방경</u>	<u>2</u>	<u><삭 제></u>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간호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소방위	<u>1</u>	<u>2</u>	+1
·	·	·	
<u>간호주사보 또는 소방위</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43</u>	<u>42</u>	-1
소방공무원 계	<u>19</u>	<u>18</u>	-1
소방정 이하	<u>19</u>	<u>18</u>	-1
·	·	·	
·	·	·	